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88호 2015. 5. 19.(화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6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
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- 676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5월 18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규정 변경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장 직위 변경

2. 주요내용
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(안 제3조,제6조,제9조)
 - 위원장 : 소관업무 담당국장 → 소관업무 담당 실.국장
 - 소위원장 : 위원중 호선 → 소관업무 담당 실.과장
 - 간사 : 소관업무 과장 → 소관업무 담당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안전총괄실, 전화 032-560-4700, 팩스 032-560-273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제5에 따라”로, “검토위원회 (이하 “검토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”를 “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토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」(이하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(이하 “검토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”로, “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6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

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담당국장”을 “담당 실·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갖춘 자”를 “갖춘 사람”으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5인 이상 10인”을 “5명 이상 10명”으로, “호선한다”를 “소관 업무 담당 실·과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”을 “소관업무 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<u>제4조제5항의 규정</u>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<u>검토위원회(이하 “검토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검토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<u>각호의</u>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<u>당해</u>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3. (생 략) 4. <u>영 제6조제2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고시된 <u>중점검토항목</u> <p>제3조(구성)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<u>1인</u>을 포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4조제5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<u>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<u>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(이하 “검토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제6조제1항에 따른--각 호-----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영 제6조제2항에 따른</u>----- ----- 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<u>1명을 포함한</u></p>

한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
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은
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
할 수 없다.

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
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
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
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
춘 자 또는 자연재해업무를 담
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인천
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
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
한다.

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
2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
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6조(소위원회) ① (생략)

②소위원회는 재해영향성 사전
검토대상이 되는 때 단위계획별
로 소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
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
되, 소위원장은 호선한다.

20명 이상 40명-----

-----.

②-----
-----담당 실·국장-----
-----.

③-----
-----갖
춘 사람-----

-----사람
으로-----.

④-----
-----각 호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5명 이상
10명-----
-----소관업무 담당 실

③ (생략)

④위원장은 소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검토안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출된 재해저감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9조(간사) ①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검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· 과장으로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제2항에 따라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간사) ① -----

-----1명-----

-----소관업무 담당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취

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

-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1항

-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.

1.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
2.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